

정보공개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의 취지에 따라 예원 예술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보란 본교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2.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정보공개 원칙) 본교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대상정보의 주요목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공개대상정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
2.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
3.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4.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보

제5조(정보공개 절차) ① 청구인은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청구대상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([별지 제1호 서식]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지원처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, 주무부서장은 관계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)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[별지 제2호 서식]으로 통지한다.

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다.

제7조(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)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,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.

②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[별지 제3호 서식]으로 통지한다.

제8조(정보공개 제한)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,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③ 청구된 정보가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)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

둔다.

②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1.>

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직자로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주무부서의 장이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
2. 그 밖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청구인의 의무) ① 청구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취득한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,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)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본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[별지 제4호 서식]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(제정 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개정 2015. 10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